

TÜV SÜD Korea Ltd.(이하 “TSK”)의 일반거래조건(이하 “일반거래조건”)

- 국문 번역본 -

발효: 2020년 1월 28일

발주서, 견적서 등 TSK에 의해 발행된 거래조건의 승인은 계약 당사자간의 다른 상호 서면 협의가 없는 한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었든지 본 일반구매계약조건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문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본 GTC는 양 계약 당사자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양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양 당사자간의 이전의 여하한 구두 혹은 서면의 의사교환을 대신한다.

1. 일반 사항

- 1.1. 본 일반거래조건은 TSK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 시험(Product Testing) / 검사(Inspection) / 인증(Certification) / 컨설팅(Consulting) / 훈련서비스(Training Services)(이하 총칭하여 “기술용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 1.2. 고객(client)은 TSK의 본 일반거래조건 및 발주 시점의 유효 가격을 승낙한다. 고객이 일반거래조건을 벗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1.3. TSK의 직원 또는 TSK가 초청하고 권한을 부여한 전문가들이 체결한 부속계약(ancillary agreements), 약정 및 기타 진술은 TSK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본 일반거래조건의 개정에도 적용된다.

2. 계약 이행 및 고객의 책임

- 2.1.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TSK의 용역은 계약시작일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여 제공된다. 당사는 별도의 충돌되는 서면 동의나 강행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특정 조치가 없다면, TSK는 검사의 방법 혹은 유형을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자의적으로 선택, 결정할 수 있다.

TSK는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가 아닌 이상, TSK의 관례(customary manner)에 따라 기술용역을 수행한다. 별도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없는 한 TSK는 시험 및 검사의 근거가 되는 안전 프로그램 및 안전 규정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2. TSK가 수행할 기술용역의 범위는 발주 시에 해당 주문에 관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만약 당사자가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기술용역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발주 시에 정한 기술용역의 범위를 수정 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정, 확장의 이행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2.3. 고객은 기술용역계약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술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고객은 TSK와 그의 자문위원, 자회사, 계열사, 대행사 혹은 그 외 관계자에게 외국 시험보고서, 회사 시험보고서, 제품 사양, 카탈로그 및 사용 설명서 등 기술용역에 필요한 부속품(accessories), 정보 및/또는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필요한 부속품, 정보 또는 서류들이 TSK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모두 제공되기 전까지 TSK는 기술용역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TSK와 그의 자문위원, 자회사, 계열사, 대행사 혹은 그 외 관계자가 기술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동의와 허가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2.4. 고객이 본 일반거래조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TSK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2주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TSK는 고객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이 TS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성 대금의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분할 납부의 경우 1회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TSK는 즉시 기술용역을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
- 2.5. 본 일반거래조건 2.7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어떠한 사유로든 기술용역계약을 해지 혹은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TSK에게 그러한 명백한 해제,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제, 해지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TSK는 기술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한 부분에 대한 기술 용역 대금을 기술용역계약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다.
- 2.6. 본 일반거래조건 2.7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용역 계약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지불해야 한다.
- 2.7. 기술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는 귀책 당사자에 관계 없이 기술용역계약 하에서 발생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 책임,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객은 TSK에 대하여 해지 시까지 유효하게 제공된 기술용역의 대가를 정산해 주고 해지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 2.8. TSK는 기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자를 사용할 수 있다.

3. 이행 지체 또는 불이행

- 3.1. 견적서에 기술된 용역의 납기일은 별도의 명시적인 서면동의로 합의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TSK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3.2. TSK의 계약 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TSK는 지체기간에 따라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 3.3. 본 일반거래조건 제 3조의 일반적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용역 기술 계약의 지연이 있을 경우, TSK는 그러한 지연, 지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a) 고객이 기술용역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b) 고객이 기술용역 계약에서 정의한 방법 혹은 기준대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 혹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 c) 기타 고객의 비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 3.4. TSK의 귀책사유로 구속력있는 용역납기일을 초과하여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당해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 할 권리가 있다. 지연에 대한 최대 보상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이 지연되는 계약대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적인 손해 배상이 필요할 경우 본 일반거래조건 5조의 적용을 받는다.

4. 보장

- 4.1. TSK는 본 일반거래조건에 따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의무(care and diligence)를 다할 것을 보장한다.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일반거래조건에 명시된 경우가 아닌 이상 TSK가 보장한 다른 모든 사항은 보장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4.2. 고객은 TSK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 및/또는 서류가 모든 측면에서 정확하다는(accurate and correct) 점을 보장하며,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서류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본 일반거래조건에 따른 기술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TSK를 면책한다.
- 4.3. TSK의 하자보증은 각 기술용역계약에 명시적으로 요청된 용역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검사 또는 시험제품이 속해있는 시설 혹은 제품의 올바른 상태 및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하자보증은 제외된다. 특별히,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TSK는 검사된 시설 혹은 제품의 설계, 재료 및 건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하자보증책임 및 법적 책임은 제한 혹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4.4. TSK의 하자보증이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제한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고객은 제공된 기술용역을 처음 수락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 가격 인하 또는 계약 철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단, TSK가 고의적으로 용역의 하자를 은폐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5. 책임

- 5.1. TSK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제품/장비에 대하여 모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나, TSK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송 중 또는 TSK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제품/장비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제품/장비가 운송 중인지 또는 TSK의 부지 내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품/장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5.2. TSK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i) TSK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혹은 ii) TSK의 과실로 인하여 기술용역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TSK가 중요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TSK는 기술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할 때 해당 기술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TSK는 중요한 계약조건 이외의 조건을 과실로 인하여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3. 고객사가 Atomic Energy Act (AtG: Atomgesetz) 제 13조 5 항에 따라 TSK가 라이선스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서 수행한 방사성 물질의 처리, 특별히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TSK가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은 각각의 사건별로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대보장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본 일반거래조건 5.2를 준용한다.
- 5.4. “중요한 의무”란 계약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고객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기술용역계약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의무이다. 또한 중요한 의무란 계약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고객사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 5.5. TSK를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가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이는 TSK의 혹은 관련된 공인 기관, 전문가, 기타 직원, 다양한 대리인 혹은 보조 직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동일하게 배제, 제한하여야 한다.
- 5.6.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사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소멸시효의 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 5.7. TSK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 간접적 손해와 특별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수익, 이익, 계약, 사업 또는 기대수익(anticipated savings)의 손실 또는 영업권 또는 평판의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5.8. 양 당사자간의 어떠한 계약 혹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TSK가 기술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및/또는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총 보상한도는 (단, TSK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는 제외) 다음 두 가지 중 적은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i) TSK가 당해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실제로 수령한 기성대금 혹은 ii) 1,000,000.00 유로 (재산 손해의 경우) 혹은 500,000.00 유로 (경제적 손실).
- 5.9. 전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TSK가 지불해야 하는 총 지체상금의 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역 기술 계약 기성대금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5.10. 기술용역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용역 기술 계약에서 손해 최소화 의무를 명시하였는지 아니든지, 각 계약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전술의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기술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관련 보험의 가입을 포함한다.

6. 지급 조건, 가격

- 6.1. 고정 가격 또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가 아닌 이상, 용역은 계약 체결 당시의 TSK가 정한 유효 가격에 따라 청구된다. 유효 가격표가 없는 경우, 계약 규정은 계약 별로 별도로 합의되어야 한다. 고객의 주문시점과 TSK가 해당 주문을 완료한 시점 간에 4개월 이상의 간격이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 가격이 인상된 경우, 5번째 월에는 변경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 6.2. TSK는 합리적인 선급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분할송장을 작성할 수 있다. TSK는 분할송장을 발송할 때 해당 송장이 분할송장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송장의 수령은 TSK가 주문에 대한 청구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 6.3. 만약 TSK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원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비용을 소요하였을 경우, 고객은 TSK가 소요한 모든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추가 용역 발생의 경우, 약 계약당사자간의 추가 용역 비용에 대한 명백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은 TSK의 추가 용역 수행 시점의 자체 산정 기준에 따른 용역 기술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여행 경비와 같은 직접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불한다. 전술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물가 상승 등 계약 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TSK는 기술용역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계약대금 이외에 차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그러한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다.
- 6.4. 본 일반계약 조건의 어떠한 조항의 내용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간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기술용역계약과 관련하여 TSK가 제공한 견적서의 가격, 용역 범위와 일정은 견적서 제공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TSK의 재량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6.5. TSK가 별도의 지급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회사들은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TSK가 별도의 지급조건을 부여한 회사들의 경우, 작업 완료 시 송장이 발행되며 송장 제시(presentation)일로부터 30일 이내에 TSK에게 계약 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모든 대금은 즉시 지급가능한 화폐로 송장에 기재된 통화와 액수 그대로 전신송금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은 기성대금을 보류, 상쇄, 공제, 반소할 수 없고 송장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TSK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6.6. 고객이 송장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의 0.04%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TSK는 그러한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 6.7. 고객은 본 일반거래조건에 따라 TSK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결과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 또는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등에 대하여 TSK를 면책하고 이를 TSK에게 지급함에 동의한다.
- 6.8. 송장에 대한 이의는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의 제외 기간(preclusion period) 내에 TSK에 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6.9. 고객이 기술용역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에 TSK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고객은 그러한 철회 이전에 수행된 모든 기술용역에 대한 요금을 부담한다. TSK가 위 기간 내에 철회의 서면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금 전액이 부과된다.
- 6.10. 예정된 감사일(audit date) 전 6주 이내의 단기 취소(short-term cancellation)(감사일 연기)의 경우, TSK는 그러한 취소/연기와 관련하여 TSK에게 발생한 추가 비용을 고객(customer)에게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
- 6.11. 기술용역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종료 어떠한 경우에도, TSK가 고객과의 합의를 위하여 제공한 모든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용역대금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은 TSK가 수행한 용역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용역계약 시점의 총 예상 소요비용 중 유효한 해지, 해제, 중단 시점까지 실제로 TSK가 소요한 비용의 비율을 총 계약대금에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TSK가 실제로 소요한 비용은(총 소요시간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아니하고) TSK의 기록을 독점적 근거로 하여 계산된다. 전술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TSK가 인증 절차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고객의 제품/장비 및 용역의 품질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인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당해 기술용역 전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6.12. TSK에게 책임 없는 지연의 경우, 고객에게 책임 있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TSK는 이로 인한 손실, 손해 혹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비밀 유지, 저작권, 자료 보호

- 7.1. TSK는 주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열람(perusal)을 위해 고객이 제출한 서면을 복사 및 보관(file)할 권리를 보유한다.
- 7.2. 계약 이행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검사보고서 및 그와 유사한 서류들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TSK는 계약의 근본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고객에게 위 서류들의 저작권에 대한 단순하고 양도할 수 없는(simple, non-transferable)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의 이전은 명시적으로 다른 권리의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고객은 제공 받은 전문가 의견서, 검사 보고서, 시험 결과, 산정 및 그와 유사한 다른 서류를 변경(처리)하거나 사업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outside its business) 사용할 수 없다.

- 7.3. TSK, 그 직원 및 TSK가 초청한 전문 엔지니어들(이하 통칭하여 “TSK 측”)은, 고객의 별도 승인 없이는, 활동 중 알게 된 고객의 비밀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i) 그러한 공개 전에 TSK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ii) TSK 측의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 없이 공중에게 공개된 정보, (iii)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 3자 또는 해당 정보를 기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취득한 제3자로부터 수령한 정보, (iv) 공개된 비밀정보와 관계 없이 TSK가 독립적으로 고안 또는 개발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유치권

법률에 따라 TSK가 가지는 유치권에 추가하여, TSK는 기술용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유치권을 가진다.

9. 소송 비용

TSK의 기술용역의 수행,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고객은 TSK와 소송 관련자가 당해 소송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근무 수당, 소송 비용, 변호사비 등 TSK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면책

고객은 기술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TSK가 입은 모든 손해와 TSK가 지출한 비용 및 제 3자가 제기한 청구(시험보고서의 무단 이용, 부정확한 정보 및/또는 문서의 제공, 자신의 권리 침해 또는 지적재산권 및/또는 정보의 발견 주장, 서류 또는 제품/장비의 인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TSK를 완전히 면책하고 그러한 소송으로 인해 TSK와 그 임직원, 계열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은 그러한 귀책으로 인하여 TSK를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소송과정에 있어 TSK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만약 TSK가 제 3자의 주장이나 소송을 직접 방어하기로 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제 3자의 주장이나 소송 방어를 위하여 TSK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TSK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11. 상표권

11.1. 고객은 오직 TSK가 서면으로 승인한 항목에 대하여만 TSK의 이름, 상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고객은 TSK의 이름, 상표, 상표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11.2. 고객은 TSK가 그 상표와 상표권에 대하여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표와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다투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부작위 혹은 TSK 상표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대리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행위 혹은 부작위에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연계 혹은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한다. 고객의 TSK 서비스 마크, 상표, 상표권과 사용하여 발생한 모든 영업권에 대하여 TSK는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다.

11.3. 용역계약의 종료일자로 고객은 TSK의 상표, 상표권, 이름, 부여된 직책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에 명시된 일자 혹은 범위 이외의 사용에 대하여 양 계약 당사자는 선의로 그 사용여부와 대금에 대하여 추후

협의하여야 한다.

12. 법원 출석

TSK의 직원이 TSK가 제공한 기술용역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전문증인(expert witness)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것을 고객으로부터 요청 받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 고객은 그러한 법원 출석에 대하여 TSK가 적용하는 법원 출석 요율을 TSK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TSK는 자신의 재량으로 고객과의 동의 후 법원 출석 요율을 수시 변경할 수 있다.

13. 통지 의무

본 일반거래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술 용역과 관련한 통지, 동의, 요구, 요청, 승인 등의 모든 의사소통은 계약당사자 대표나 법적 대리인의 서명을 포함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유효하며 각 기술용역계약이 시작할 때, 혹은 계약 수행 중에 때때로 규정된 주소로 TSK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14. 구속력과 회사의 보증

기술 용역의 고객은 TSK에게 다음을 보증하고 보장한다:

- a) 일반거래조건은 공정하게 작성, 전달되어 고객은 이를 숙지하였으며, 본 일반거래조건의 모든 조항은 본 일반거래조건에 동의할 법적이고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갖는다. 본 일반거래조건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강제력을 가지며 TSK는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 b) 고객은 적법하게 존재하는 회사이며 본 계약의 체결과 수행을 위한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졌음을 보증한다. 또한 고객은 고객의 재무 상태나 장래성에 개별적 혹은 집합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고객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예상 가능한 어떠한 소송, 행정, 중재 절차나 정부 조사 등이 없음을 보증한다.

15. 완전합의, 수정, 권리포기

본 일반거래조건과, TSK에 의하여 제공되고 양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계약서는 통합되어 일반거래조건과 당해 계약에서 다뤄진 내용에 관한 TSK와 고객간의 완전한 최종 합의이며 본 일반거래조건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고객의 일반거래조건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 간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도 우선하며, 완전하고 배타적인 계약이다. 본 일반거래조건의 수정, 추가, 권리포기 등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고객의 인쇄된 주문서에 적혀있는 거래조건, 접수통지서, 일반거래조건, 확인서 등 이와 비슷한 어떤 성질의 것이든 본 일반거래조건을 대체, 변경하거나 이에 추가될 수 없다. 또한, 위 TSK의 본 일반거래조건상의 권리, 능력, 특권 불행사 혹은 행사지연은 그 권리의 포기 또는 고객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TSK의 본 일반거래조건상의 권리, 능력, 특권의 단일행사나 부분행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6. 일부 무효

본 일반거래조건 혹은 용역계약의 일부가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될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무효는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 의미로 대체되어야 한다.

17. 준거법, 언어

- 17.1.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규율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된다.
- 17.2. TSK와 고객은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비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함에 합의한다.
- 17.3. 본 일반거래조건은 영어와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한다. 또한, TSK와 고객간의 모든 계약에 있어서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시 영문이 우선한다.

18. 중재조항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ICC에 제소되어 ICC 중재규칙에 따라 지정된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ICC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 되어야 한다. 중재장소는 서울이며 절차법은 ICC 중재규칙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국법으로 한다.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며, 중재위원회는 세명으로 한다.